



2026년「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유통상담회 참여기업 모집공고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는 도내 중소기업 우수 제품의 유통 판로개척과 역량 제고를 위하여 2026년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유통상담회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 하오니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 2월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




1 지원사업 개요

- 사업명 : 2026년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6. 2월 ~ 3월
- 사업내용 : 경기도 중소기업의 유통 MD 1:1 매칭 상담
- 지원대상 :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공고일 현재 기준)
- 지원규모 : 100개사 내외 *내외부 사정에 따라 가감될수 있음
- 지원기간 : 2026.02.26. (목) 행사 진행 예정 *당일 참가
- 지원가능 제품 하단 '표' 참조

지원기업 신청가능 제품군	지원기업 신청불가 제품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내 중소기업이 국내에서 자체 생산한(기획·제조) 제품 - 도내 중소기업이 설립한 해외공장에서 생산한 제품 - 도내 중소기업이 국내에서 다른 업체에 위탁생산(OEM)한 제품 - 도내 중소기업이 해외기업에 위탁생산(OEM)한 제품 - 자사 제품과 타사 브랜드가 협업(콜라보레이션)하여 기획된 한정 제품 - 도내 농업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경영체의 제품 - 도내 중소기업이 산지 계약재배를 통해 생산한 제품 (도외 재배 시, 도내 주소지를 둔 농업경영체만 지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류, 의약품, 기업형 의료기기, 산업재, 원부자재류, 부품, 소프트웨어 등 온라인 유통채널에서 판매가 불가능한 제품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보호, 상표, 저작권 등 법적 분쟁이 있는 제품 - 다른상품을 표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제품 - 시장에서 바로 유통이 어려운 시제품 - 공급사 및 제조사를 통해 구매하여 재판매하는 제품 - 해외직구 및 병행수입을 통해 구매하여 재판매하는 제품

2 지원사업 세부 내용

1 지원사업

구분	지원내용
유통 상담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별 1:1 유통 MD 또는 구매 유관 담당자 매칭 - 국내/외 판로 개척 관련 상담 - 현장 채널 접수 등 다양한 상담 기회 제공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p style="text-align: center;">상담회 현장</p>

3 사업 진행절차 및 심사 내용

1 사업 진행 절차



2 절차 및 내용

- 1차 : 서류전형 * 지원대상 부합여부 확인
- 2차 : 사전 수요 조사를 통한 채널 매칭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6년 1월 23일 (금) ~ 2월 8일 (일) 18:00 까지
* 내/외부 사정에 따라 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 접수만 가능
 - ① [사업신청] 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www.kgcbrand.com)접속
→ 알림소식 → 사업광고 → 경기도 '2026년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유통 상담회 참여기업 모집 공고 선택 → 지원사업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및 신청서류 다운로드 → 구비서류 업로드 → 상품 등록(대표상품 1개 필수) → 접수 완료

2 필수 제출서류

구분	제출 서류	제출 서류 유의사항
작성 서류	[서식1] 개인정보 및 기업 경영 정보 수집 활용에 대한 안내 및 제공 동의서	* 사업 공고문에 첨부된 제출서류 다 운로드하여 작성 후 스캔하여 ZIP 파일로 압축 후 회사소개서 및 기타 자료란에 업로드
첨부 서류	[첨부서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 첨부서류는 원본대조필, 유효기간은 접 수기간 내 서류에 한함
	[첨부서류] 중소기업 확인서(국세, 지방세 납부 확인서)	* 서류가 많을 경우 ZIP 파일로 압축 후 회사소개서 및 기타 자료란에 업로드.
	[첨부서류] 인증 및 확인서 등 증빙서류	* 서류 제출시에만 가산점 부여 (4p 사업별 가산점 항목 참고) * 착한기업 선정기업 인증서류는 회사 소개서 및 기타자료란에 업로드
	 <p>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납세증명서 지방세납부확인서 인증서 및 확인서</p>	
선택	[서식2] 이의 및 구제신청서	* 범위반 해당기업의 경우 이의 및 구 제 신청시에만 제출
	회사소개서 및 기타 자료	* 회사 및 상품 관련 자료 첨부시 평 가에 긍정적으로 반영 될 수 있음 * 용량 큰 경우 이메일로 후첨 가능

5 사업참여 유의사항

1 「경기도 범위반 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준수

○ 조례 제6조에 따라, 범위반 사실 확인시 평가 총점의 20% 감점 적용

- ① 조례 제2조제1호 공정, 노동, 환경, 납세 관련 11개 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가. (공정) ① 공정거래법, ② 하도급법, ③ 표시광고법
나. (노동) ④ 근로기준법, ⑤ 산업안전보건법
다. (환경) ⑥ 폐기물관리법, ⑦ 대기환경보전법, ⑧ 소음진동관리법, ⑨ 물환경보전법
라. (납세) ⑩ 국세기본법, ⑪ 지방세기본법

② 위반사실 조회기간 : 사업 공모일(모집일) 기준 2년 이내

- 가. 범위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행정처분 기준 처분, 과징금, 과태료
나. 범위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고소, 고발건은 사실 확인시 제한기준 적용

③ 사업참여 제한조건(변경)

(기존) 범위반 사실 확인시(1회이상) 공모사업 참여자격 제한

(변경) 법위반 사실 확인시(1회이상) 평가 총점의 20% 감점 적용

가. 사업자 선정후 과거 법위반사실 확인시(법위반사실여부 확인서(서식2) 내용과 상이) 사업 취소·보조금 반환 및 3년간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나. 사업자 선정후 신규 법위반시 사업부서별(사업별) 법위반일 기준 사업취소 등 제한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음

④ 법위반사실 확인(변경)

(기존) 기업이 법위반 행정 처분기관에서 발급한 사실 확인서 제출

(변경) 사업부서에서 기업의 법위반사실 확인

가. (공정)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법위반조회발급/법위반사실조회)

나. (노동) 기업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지청

다. (환경) 기업 소재지 관할 시·군

라. (납세)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

⑤ 이의 및 구제신청(변경) : 법위반사실로 제한기준 적용사실이 통보된 날로부터 7일 이내 대상자는 소명내용이 포함된 이의신청서(서식9) 제출

(기존)

가. 사업자선정위원회(실국 또는 수탁기관)에서는 사업자 선정전 이의 및 구제신청서 검토후 (필요시 기업 출석 소명) 구제여부 결정 및 통보

나. 법위반 사실 조회기간 내 2회 이상 법위반시 소명기회 제외

(변경)

가. 사업자선정위원회 등(실국 또는 수탁기관)에서는 이의신청 기한 경과 후 14일 이내에 이의 및 구제신청서 검토 후(필요시 기업 출석 소명) 사업자 선정전 구제여부 결정 및 통보(기업의 권리구제, 행정절차 이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결정기한 연장 가능)

나. 삭제

⑥ 제출서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별첨 서류 작성 후 기타 자료 첨부)

② 공정한 [공모 - 심사 - 선정] 추진

○ 공개모집 및 외부심사위원 심사(평가)를 통한 공정한 지원기업 선정

③ 가점 제도 운영

○ 평가표 가산점 항목 참조

④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경기도 사무위탁조례」,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협약서 등 관련 규정 준수하여 추진

☎ 제출 및 문의처

☎ 사업 주관부서 : 유통사업실

☎ 문의 신청·접수 문의 : 조운서 과장 (Tel. 031-5171-5325) 박은영 주임 (Tel. 031-5171-5326)

※ 담당자 사정으로 유선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통화가 되지 않으셨을 경우 이메일

west@kgcbrand.com 로 문의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